

이송 및 퇴원권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 주법에서는 양로시설 거주자의 퇴거 조치에 대응하는 강력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거주자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며 시기적으로 부적합한 이송과 퇴원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시설은 각 거주자의 시설 체류를 허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를 시설에서 이송 또는 퇴원시킬 수 없습니다.

1. 거주자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며 거주자의 요구를 시설 내에서 충족할 수 없는 경우(42 CFR §483.15(c)(1)(i)(A)),
2. 거주자의 건강이 충분히 개선되어 거주자가 더 이상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42 CFR §483.15(c)(1)(i)(B)),
3. 거주자의 임상적 또는 행동 상태로 인해 시설 내 개인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42 CFR §483.15(c)(1)(i)(C)),
4. 이송 및 퇴원하지 않으면 시설 내 개인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42 CFR §483.15(c)(1)(i)(D)),
5. 거주자가 합리적이고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시설 이용료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42 CFR §483.15(c)(1)(i)(E)),
6.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42 CFR §483.15(c)(1)(i)(F)).

문서

시설은 거주자의 기록에 이송 근거를 기록해야 합니다. 42 CFR §483.15(c)(2). 시설 측에서 거주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상기 이유 1), 충족이 불가능한 특정 요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도 및 수용 시설에서 거주자의 요구 충족을 위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42 CFR §483.15(c)(2)(i)(A).

시설이 거주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거주자가 서비스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상기 이유 1 과 2) 해당 거주자 담당 의사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42 CFR §483.15(c)(2)(ii)(A). 시설 측에서 시설 내 개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경우(상기 이유 3 과 4)에는 모든 의사가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2 CFR §483.15(c)(2)(ii)(B).

서면 통지

시설은 거주자를 이송 또는 퇴원시키기 전에 거주자 및 거주자 대표가 이해하는 언어와 방식으로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42 CFR §483.15(c)(3)(i). 시설에서는 장기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통지서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이송 또는 퇴원하기 최소 30일 전에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다음 절 참조).

통지서에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통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이송 또는 퇴원 사유(42 CFR §483.15(c)(5)(i)),

- 이송 또는 퇴원 실행일(42 CFR §483.15(c)(5)(ii)),
- 거주자가 이송 또는 퇴원할 장소(42 CFR §483.15(c)(5)(iii)),
- 거주자의 항고권 진술서, 항고 서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항고 요청서 작성 및 제출에 지원(42 CFR §483.15(c)(5)(iv)),
- 캘리포니아 보건서비스부(42 CFR §483.15(c)(5)(iv) 산하 OHA(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and Appeals) 내 이송 및 퇴원 항고 부서의 이름,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의 All Facilities Letter,
- 장기요양 옴부즈맨의 이름,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 번호(42 CFR §483.15(c)(5)(v)),
- 발달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가 있는 거주자의 경우, 캘리포니아 보호 및 옹호 기관(Disability Rights California)의 전화번호, 우편 주소 및 이메일 주소(42 CFR §483.15(c)(5)(vi)&(vii)),
- 거주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거나 변호사, 친족, 친구 또는 그 밖의 대변인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성명서(42 CFR §431.206).

고지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시설은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변경 사항을 거주자 및 거주자의 대표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42 CFR §483.15(c)(6). 목적지 변동 등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30일 사전 통보를 제공하기 위해 변경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송 또는 퇴원 날짜를 재설정하는 새로운 통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CMS State Operations Manual, 부록 PP – F623,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평가관 지침.

거주자에게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는 서면 통지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거주자는 시설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30 일 통지 예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0 일 통지 요건에 대한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연방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이송 또는 퇴원 전에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설 내 개인의 건강 또는 안전이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거주자에게 긴급 의료가 필요하여 보다 즉각적인 이송이 필요할 경우. 거주자의 건강이 보다 즉각적인 이송이나 퇴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개선되었거나 거주자가 시설에 30 일 이내로 거주한 경우. 42 CFR §483.15(c)(4).

30 일 통지 요건에 대한 예외가 충족되더라도, 시설은 이와 관계없이 제안된 이송 또는 퇴원 전에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항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요양시설은 항고 기간 동안에는 거주자 또는 시설 내의 다른 개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거주자를 이송 또는 퇴원시킬 수 없습니다. 42 CFR §483.15(c)(1)(ii).

캘리포니아 주법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요양시설이 이송 또는 퇴원 시 모든 경우 서면으로 '합리적 사전통지'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H&S Code §1599.78, 22 CCR §72527(a)(6).

이송 또는 퇴원 항고

거주자는 요양시설의 이송 또는 퇴원 시도에 대해 항고할 수 있으며, 청문회를 진행하고 캘리포니아 보건서비스부(DHCS)의 결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항고를 요청하려면 보건서비스부의 이송 퇴원 및 재입원 거부 부서(Transfer Discharge and Refusal to

Readmit Unit)로 전화((916) 445-9775 또는 (916) 322-5603)하십시오. DHCS 에서 청문회 개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CANHR 로 문의하여 자문을 요청하십시오.

항고가 접수되면 시설은 항고 진행 기간 동안 거주자를 퇴원시킬 수 없습니다. CMS State Operations Manual, 부록 PP - F623,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평가관 지침.

DHCS 소속 청문 담당자는 청문회를 감독하고 재결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청문회는 보통 거주자가 거주하는 요양시설에서 열리거나, 거주자가 입원 중이며 재입원 거부에 항고하는 경우 해당 병원에서 진행됩니다. 청문회는 화상회의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청문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거주자는 중요한 적법 절차 권한을 갖습니다. 연방 규정법 제 42 호의 431 부 E 하위절. 이송 및 퇴원 항고가 진행되는 동안 거주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습니다.

- 청문회 개최일 이전 및 청문회 기간 중 적합한 시기에 전문 요양시설을 통해 청문회에서 사용할 모든 문서와 기록을 검토할 권리(42 CFR §431.242(a)),
- 증인을 소환할 권리(42 CFR §431.242(b)),
-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수립할 권리(42 CFR §431.242(c)),
- 부당한 간섭 없이 주장을 제기할 권리(42 CFR §431.242(d)),
- 상대측 증인과 맞서고 반대 심문을 할 기회를 포함하여 증언이나 증거에 대해 질문 또는 반박할 권리(42 CFR §431.242(e)).

청문회 결과 부적절한 이송·퇴원 피해 거주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도출될 경우, 보건서비스부는 신속하게 해당 거주자의 요양시설 입소 또는 재입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42 CFR §431.246.

입원 후 요양시설 재입원

요양시설 거주자는 입원 후 재입원할 권리를 갖습니다. 요양시설은 거주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때마다 거주자 또는 그 가족이 거주자의 침상을 최장 7 일까지 점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22 CCR §72520. 이를 침상 점거라고 합니다. 거주자가 Medi-Cal 가입자일 경우, Medi-Cal 프로그램에서 최장 7 일까지 침상 점거 비용을 지불합니다. 22 CCR §51535.1. 요양시설은 거주자의 병원 이송 시 거주자와 그 가족에 침상 점거 고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2 CCR §72520(b) & 42 CFR §483.15(d). 요양시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요양시설은 입원 종료 이후에 이용 가능한 침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22 CCR §72520(c). 또한 Medi-Cal 에 가입한 모든 거주자는 입원 기간이 7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요양시설에 재입원할 권리를 갖습니다. 거주자가 여전히 요양시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요양시설은 가능할 경우 거주자가 이전에 머물렀던 방으로 재입원을 진행하거나 또는 반개인실의 바로 사용 가능한 침상으로 즉시 재입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42 CFR §483.15(e).

시설 측이 입원 이후 거주자의 침상 확보 또는 재입원을 거부할 경우 비자발적 이송으로 처리되어 거주자에게 전입항고권이 발생합니다. H&S Code §1599.1(h). 항고를 요청하려면 보건서비스부 이송/퇴원 및 재입원 거절 부서로 전화((916) 445-9775 또는 (916) 322-5603)하여 재입원 항고를 문의하십시오. 거주자가 Medi-Cal 가입자이거나 다른 지불원이 있을 경우, 해당 거주자는 청문 담당자의 최종 결정이 통보될 때까지 병원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H&S Code §1599.1(h)(3). 거주자가 Medi-Cal 미가입자이거나 다른 지불원이 없을 경우, 48 시간 이내에 청문회가 진행되고 최종 결정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H&S Code §1599.1(h)(5).

청문회 결과 재입원을 거부당한 거주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도출된 경우, 보건의료서비스부(DHCS)는 해당 요양시설에 대한 거주자의 재입원을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42 CFR. §431.246.

요양시설은 거주자의 재입원을 명하는 청문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정에 따라야 하며 DHCS 에 준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문 결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DHCS 는 일일 최대 75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W&I Code §14126.029.

항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이송 또는 퇴원 항고' 절을 참조하십시오.

Medi-Cal 전환

입원 후 Medi-Cal 자격을 얻은 거주자는 '환자 부담금'으로 알려진 Medi-Cal 에서 허용하는 요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42 CFR §483.10(f)(11), H&S Code §1599.69.

적시에 Medi-Cal 을 신청하여 적격여부 결정이 나지 않은 거주자에 대한 요양시설의 이송 또는 퇴원 조치는 금지됩니다. W&I Code §14124.7, 42 CFR §483.15(c)(1)(i)(E). 거주자의 Medi-Cal 최초 신청이 거부되었으나 이에 항고할 경우 거주자는 미지불 상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고는 미지불 판결의 효력을 정지합니다. CMS State Operations Manual, 부록 PP - F622, 장기 요양시설에 대한 평가관 지침.

또한 Medicare 또는 개인 지불에서 Medi-Cal 로의 변경을 이유로 거주자를 다른 방으로 이송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단, 거주자를 개인실에서 준개인실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W&I Code §14124.7.

Medicare 보장 종료 후 거주자 퇴거

가장 일반적인 불법 양로시설 퇴거 유형 중 하나는 Medicare 보장 기간 종료 시 거주자를 퇴거시키는 것입니다. Medicare 에 가입한 거주자는 전문 요양시설 체류에 대한 보장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거주자가 여전히 요양시설 및 돌봄을 필요로 하며 의료비가 지불되는 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종료된 후에도 시설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Medi-Cal 인증 시설에서 Medicare 에 가입한 거주자는 적격할 경우 Medi-Cal 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W&I Code §14124.7. Medi-Cal 인증을 받은 전문 요양시설의 모든 침상은 인증을 받았으므로, 이용가능한 Medi-Cal 또는 '장기요양' 침상이 없다는 시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Medi-Cal 에 가입하거나 이를 신청하는 거주자에 대한 차별은 위법입니다. W&I Code §14124.10, 42 USC §1396r(c)(4).

Medicare 또는 기타 보험사의 비보상 통지는 요양시설 측의 이송 또는 퇴원 통지와 같지 아니하며, 이송 또는 퇴원을 진행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요양시설에서 거주자의 Medicare 기간 종료 시 자발적으로 퇴소하도록 압박할 경우 이에 응하지 마십시오. 통지서 및 기타 법적 요구 사항을 모두 준수하지 않으면 퇴원을 진행할 수 없으며, 지불원 변경은 퇴원을 진행할 충분한 법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십시오.

Medicare 에 대한 거주자의 이송 및 퇴원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edicare 적용 종료 후 요양시설 퇴거에 대한 CANHR 의 경고와 Center for Medicare Advocacy 에서 작성한 Medicare 수익자의 퇴원 권리에 대한 이슈브리프를 참조하십시오.

퇴원 계획 및 이송 외상

시설은 거주자에게 충분한 준비와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송 또는 퇴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42 CFR §483.15(c)(7)). 시설 직원은 종종 이송 과정에서 수반되는

불필요하고 회피 가능한 불안이나 우울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현상은 '이송 외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거주자가 퇴원에 대한 선택권이나 통제 권한을 거의 갖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요양시설은 또한 거주자와 거주자 대표인을 퇴원 계획의 파트너로 대우하고, 거주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퇴원 목표와 치료 선호도에 초점을 맞춘 퇴원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42 CFR §483.21(c). 시설에서 거주자의 타 요양시설 이송을 계획할 경우, 해당 시설의 수준에 관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거주자가 자신의 관리 및 치료 선호도에 부합하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은 이송 또는 퇴원을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환자를 '수용할 시설'에 많은 중요 관리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42 CFR §§483.15(c)(2)(iii), 483.21(c)(2).

가정 또는 다른 커뮤니티 환경으로의 퇴원이 계획된 경우, 요양시설은 커뮤니티 내 서비스와 리소스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시설은 거주자의 체류 정보가 요약된 퇴원 요약서와 거주자가 거주를 계획하는 장소, 사후 관리 및 퇴원 후 의료 및 비의료 서비스를 명시한 퇴원 후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42 CFR §483.21(c), H&S Code §1418.81.

거주자 떠넘기기

시설에서는 종종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거주자에 대한 '떠넘기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한 거주자를 전출 또는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법은 요양시설에서 각 거주자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녕을 실현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42 USC §1396r(b)(2), 42 CFR §483.24. 거주자 떠넘기기를 시도하는 시설은 보통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보복

일부 시설은 거주자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면 거주자 퇴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주법에 따르면 누군가가 거주자를 대신하여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요양시설에서 거주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원 제기 후 180 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퇴거와 관련된 모든 시도는 보복 또는 차별으로 간주됩니다. H&S Code §1432.

시설 폐쇄

시설이 폐쇄될 경우,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거주자에게 최소 60 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 60 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H&S Code §1336 -1336.2. 또한 시설은 주민들의 전출 수요 파악과 대체 입소 제안 등 이송 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H&S Code §1336.2. 폐쇄의 결과로 퇴원하는 거주자의 수가 10 인을 상회할 경우, 해당 시설은 서면 전출 계획을 세워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의 주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H&S Code §1336.2.

연방법에서는 또한 거주자, 그 대표자, 공중보건부 및 장기요양 옴부즈맨에 대해 60 일 이상의 휴업 통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통지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시설에서 새 거주자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요양시설의 이송 계획에는 각 거주자의 수요와 선택,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품질, 서비스, 입지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시설이나 다른 환경으로 거주자가 이송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2 CFR §483.70(l), 42 CFR §483.15(c)(8).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의 조사

상기된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 부서에 항고를 제기하는 것 외에도, 퇴거를 당하거나 재입원이 거부될 경우 공중보건부(DPH)에 항고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DPH 는 요양시설 허가 및

조사를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기관입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DPH는 해당 요양시설의 이송, 퇴원 및 재입원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합니다. DPH가 민원 제기자의 권리 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요양시설에 벌금 및 기타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을 관할하는 DPH 구청에 연락하여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CANHR의 민원 제기 팩트 시트에서 민원 절차에 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거 대응에 도움이 되는 팁

- **서면 통지 없이 이송 또는 퇴원을 앞둔 경우 DHCS 및 DPH에 즉시 전화하십시오.** 즉시 개입을 요청하여 임박한 퇴거를 중지하십시오.
- **요양시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제안된 이송 또는 퇴원이 부적절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내용 증명 우편으로 관리자에게 편지를 보내 대화를 문서로 남기십시오.
- **옴부즈맨에 연락하십시오.** 장기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거주자와 요양시설 간의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옴부즈맨은 때때로 부적절한 퇴거를 막거나 거주자를 대신하여 항고 청문회에 참여합니다.
- **통지를 검토하십시오.** '통지서'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항고 청문회에서 결함을 제기하십시오.
- **거주자의 기록을 검토하십시오.** 거주자의 건강상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록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청문 신청자는 청문회 개최일 이전(및 청문회 진행 중)에 양로시설이 청문회에서 사용할 모든 문서 및 기록을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 개최 전에 양로시설에 이러한 기록 열람을 요청하십시오. 시설에서 기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청문 담당자에게 알리십시오.
- **이송 또는 퇴원 계획을 평가하십시오.** 시설이 적절한 퇴원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거주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시설로의 이송을 계획하거나, 거주자와 협의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을 경우 청문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 **타 요양시설 이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요양시설에서 거주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할 때에는 동일한 면허와 인증을 획득한 다른 시설로 거주자 이송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송 계획서에는 요양시설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며, 현 요양시설에서 거주자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 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하십시오.
- **입원 거주자의 재입원 거부에 대해 즉시 항고하십시오.** 요양시설에서 입원 중인 거주자의 재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DHCS에 항고를 제기하십시오. 항고는 거주자의 청문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병원에 체류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 **요양시설이 DHCS의 재입원 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CANHR으로 연락하십시오.** CANHR은 요양시설의 재입원 명령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Medi-Cal 거부에 항고하십시오.** Medi-Cal이 요양시설 체류 자격 또는 보장을 거부하여 미지불이 이송/퇴원의 근거가 된 경우, 거주자는 이송/퇴원과 Medi-Cal 거부에 모두 항고해야 합니다. Medi-Cal 거부에 대한 별도의 항고 절차가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거부를 이송 및 퇴원 통지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Medicare, Medicare Managed Care Plan 및 다른 보험사의 보장 거부는 요양시설에 체류할 권리가 아닌 의료비 지불에 관한 것입니다. 보장이 거부된 거주자를 비롯한 모든 거주자에게는 요양시설에서 이송 및 퇴원 통지를 받을 권리와 이송 또는 퇴원이 이루어지기 전 항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H&S 는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W&I 는 캘리포니아복지및시설법, 22 CCR 은 캘리포니아 규정 제 22 호, 42 USC 는 미국법전 제 42 호, 42 CFR 은 연방 규정 제 42 호를 참조합니다. 이송, 퇴원 및 재입원 권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CANHR 에 전화((800) 474-1116)하여 문의하십시오.